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. 5. 15 선고 2019가단7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1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. 9.

14.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이슬기

별지

1)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등기원인일을 유언서 작성일인 '2016. 8. 7.'로 기재하였다. 그러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(민법 제1073조 제1항), 유언서 작성일이 아닌 유언자의 사망일이 유증의 효력발생일이 된다. 따라서 등기원인일은 유언서 작성일인 2016. 8. 7.이 아닌 유언자인 망 I의 사망일인 2016. 9. 14.로 봄이 타당하다. 위 기재는 옳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.